#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주요 개정 내용

- □ 의원정수 및 의석배분
- **1. 의원정수** : 300명(지역구국회의원 253명 +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)
- 2. 의석배분 :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(준연동 방식)
-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
  - ※ 의석할당정당은 현행과 같음(지역구 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%)
- 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
 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
- (조정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
 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#### < 부 칙(§4) >

- 제21대 국선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배분
  - 30석에 대하여 준연동 방식으로 배분
  - 17석에 대하여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배분

- 붙임 1. 준연동형 선거제 의석배분방식 1부.
  - 2.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(부칙) 1부. 끝.

## 붙임 1

# 준연동형 선거제 의석배분방식

#### < 개 요 >

- (1단계) 전국단위 준연동(연동비율 50%) 방식으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산정
- (2-1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  - ☞ 잔여의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- (2-2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  - ☞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

### □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

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

	-		사 례			
구분	A 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지 역 구 당 선 인 수	100석	80석	40석	30석	3석	253석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 동 배 분 의 석 수	9 석	5 석	0석	15석	-	29석

※ A당 연동의석수 =  $\frac{[(국회의원정수300-무소속등3)\times A$ 당 비례득표비율40%-A당 지역구100] 2 (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, 1보다 작으면 0)

# ②-1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
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
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잔여배분 = (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 -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) ×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의석수 = (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 -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) × 득표비율

			사 례		P	
구분	A 당	B 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 동 배 분 의 석 수	9 석	5 석	0석	15석	-	29석
잔 여 배 분 의 석 수	7석	5 석	2 석	4 석		18석

※ A당 잔여의석수 = [비례정수47-29(A연동9+B연동5+C연동0+D연동 $15)] \times A$ 당 비례득표비율40%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# ②-2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비례대표 의석정수(47석)

○ (조정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 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조정의석수	=	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 × 연동배분의석수
32 0 1 11		~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

	4		사 례			
구분	A 당	B 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연 동 배 분 의 석 수	22석	18석	7석	13석	-	60석
조 정 의 석 수	17석	14석	6석	10석		47석

\*\* A당 조정의석수 =  $\frac{$  비례정수 $47 \times A$ 당 연동22 각 정당 연동 합계60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## 붙임 2

## 제21대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

#### < 개 요 >

- (1단계) 30석에 대해 전국단위 준연동(연동비율 50%) 방식으로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 신정
- (2-1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30석
  - ☞ 잔여의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- (2-2단계)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30석
  - ☞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
- (3단계) 17석에 대해 기존 의석배분방식(병립형) 적용 배분

#### 1 30석에 대해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

 (연동배분의석수 산정)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, 그 수의 50%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

	-		사 례		P	
구 분	A 당	B 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지 역 구 당 선 인 수	100석	80석	40석	30석	3석	253석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 동 배 분 의 석 수	9 석	5 석	0석	15석	-	29석

※ A당 연동의석수 =  $\frac{[(국회의원정수300-무소속등3)\times A$ 당 비례득표비율40%-A당 지역구100] 2 (결과값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, 1보다 작으면 0)

## ②-1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< 30석

(잔여배분의석수 산정)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
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잔여배분의석수 =  $\begin{pmatrix} 30 -$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$\end{pmatrix} \times$ 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

	-		사 례			
구분	A당	B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연 동 배 분 의 석 수	9석	5석	0석	15석	-	29석
잔 여 배 분 의 석 수	1석	0석	0석	0석		1석

<sup>※</sup> A당 잔여의석수 = [비례정수30-29(A연동9+B연동5+C연동0+D연동 $15)] \times A$ 당 비례득표비율40%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### ②-2.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> 30석

○ (조정의석수 산정)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 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(초과의석 방지 방안)

조정의석수	=	30	×	연동배분의석수
7 00141		각 약	면동배분의석수의	- 합계

	-		사 례			
구 분	A 당	B 당	C당	D당	무소속 등	합 계
연 동 배 분 의 석 수	13석	12석	8석	10석	-	43석
조 정 의 석 수	9석	8석	6석	7석		30석

 $^{**}$  A당 조정의석수 =  $\frac{30 \times A$ 당 연동 $13}{2$  건 정당 연동 합계 $43}$ 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

### ③ 17석에 대해 병립형 의석 배분

ㅇ 17석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

			사 례			
구분	A당	B 당	C당	D 당	무소속 등	합 계
비례득표비율	40%	30%	10%	20%	-	100%
배 분 의 석 수	7석	5 석	2석	3 석		17석

\*\* A당 배분의석수  $= 17 \times A$ 당 비례득표비율40% (결과값 정수를 먼저 배정하고, 나머지는 소수점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)